

의안번호	제 209 호
의 결 연 월 일	2008년 월 일 (제 회)

##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이영복 의원외 6인
발의 연월일	2008년 1월 14일

#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

(이영복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8. 1. 14.

발의자 : 이영복·박종갑·이규완  
이대원·권광택·정윤숙  
민경환(7인)

## 1. 제안이유

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인적·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에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충청북도의 경우 교류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충청북도가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으로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한편, 사회·인도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 구축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통일농업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북한의 주민과 공동으로 행하는 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인 사업으로 사업범위를 정함(안 제2조).
- 나.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북한에 진출한 법인·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, 필요한 경우 협력사업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도지사는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안 제5조).

- (1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.
- (2) 기금의 조성은 도 및 시·군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정함.
- (3) 기금의 용도는 남북농업교류협력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, 기금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
라.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11조 내지 안 제16조).

- (1)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.
- (2) 위원은 남북농업교류협력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남북교류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에 근무하는 자, 충청북도 의회 의원, 도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
- (3) 위원회의 기능은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총괄·조정, 남북농업 교류 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함.
- (4)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정함.

마.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7조).

### **3. 참고사항**

---

#### **가. 관계법령**

- (1)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, 제16조, 제17조, 제24조  
(교역당사자 등)
- (2)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, 제34조, 제35조  
(협력사업의 승인절차, 신청, 승인요건 등)
- (3)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
- (4)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- (5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)
- (6)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0조(자문기관의 설치)

나. 예산조치 :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임.

## 조례 제 호

#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민족의 상호 이해증진과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의 범위) 이 조례에서 “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”이라 함은 충청북도 (이하 “도”라 한다)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과 공동으로 행하는 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인 사업 등을 말한다.

제3조(남북교류협력의 추진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·단체와 연계하여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제2조의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4조(도의 책무) 도는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

제5조(설치 등) ①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한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

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한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도 및 시·군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④ 도지사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제6조(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남북농업교류협력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
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3.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운용 및 관리)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·관리하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0조의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.

②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
2. 결산보고
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

하여 세입·세출외로 관리하며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.

제8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농정본부장
2. 분임기금운용관 :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 팀장
3. 기금출납원 :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 담당사무관

②기금의 회계관리는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·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.

제9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조성계획
2. 기금의 사용계획
3. 기금의 운용방법
4.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

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보고 등) ①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

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### 제3장 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

제11조(설치) ①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당연직 위원은 도 농정본부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남북농업교류협력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에 근무하는 자
3. 충청북도의회 의원
4. 도 관계공무원

⑤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충청북도의 남북농업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

⑦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.

1.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총괄·조정
2.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
3. 남북농업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남북농업교류의 협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 등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회의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실비보상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실무추진단)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